

## 표준약관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### 【타행자동이체약관】

| 현 행  | 개 정(안)   |
|--|--|
| <p>제11조(약관의 변경) ① 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납부자에게 알립니다.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(최소 1개월 이상)합니다.</p> <p>② 약관 변경의 내용이 납부자에게 불리한 경우 제1항에 의한 게시 외에 저축은행은 이를 서면·전자우편 등 납부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(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) 개별 통지합니다. 다만, 기존 납부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납부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p> <p>③ 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납부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</p> | <p>제11조(약관의 변경) ①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 |

| 현 행  | 개 정(안)   |
|--|--|
| <p>합니다.</p> <p>④ <u>납부자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(제3항의 게시·통지내용 포함)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u></p> <p>⑤ <u>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납부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,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납부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</u></p> |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<br>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|